

수영구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수영구가족센터에서는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 아이돌보미 활동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6월 5일

수영구가족센터장

1. 채용개요

구 분	내 용
신청대상	• 2024~2025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120시간) 수료자 및 단축교육(40시간) 수료자 • 2024년 이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또는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 1~4호에 해당하는 양성교육 감면 대상자
공고기간	2025. 6. 5.(목) ~ 6. 25.(수)
접수방법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경로: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2025년 수영구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2차 -> 지원 신청
전형일정	가. 서류 발표: 2025. 6. 26.(목) 나. 인적성 검사: 2025. 6. 27.(금) 15:00 예정 / 센터 내방하여 실시 다. 면접 심사: 2025. 7. 2.(수) 13:00 예정 라. 최종 발표: 2025. 7. 3.(목) 예정 마. 인적성 검사 및 면접 심사는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위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합격자 발표	서류 전형 및 면접 전형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 발송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활동 설문 조사 - 온라인 접수자에 한하여 구글폼 문자 발송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1부 - 온라인 첨부 ※ 최종합격자는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급여통장사본 각 1부 제출 필요

2. 응시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지원 자격	• 2024~2025년 진행된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120시간) 수료자 • 2024~2025년 진행된 아이돌보미 단축 교육 과정(40시간) 수료자 • 2024년 이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또는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4호에 해당하는 양성교육 감면 대상자 ※ 2024년 이전 양성교육 수료자는 양성교육 진행 교육기관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양성교육 감면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1~3급)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유치원 정교사(1급·2급), 준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보건교사(1급·2급), 영양교사(1급·2급)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지원자 필수사항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025년 7월부터 즉시 서비스 집중시간(15:30~19:30) 활동이 가능한 자 • 24개월 이하 영아 돌봄이 가능한 자(영아 목욕, 젖병 소독 등) •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 활용 가능한 자
지원자 우대사항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 • 1일 평균 2시간 이하 단시간 활동이 가능한 자 • 주 2~3회 단기간 활동이 가능한 자 • 망미동 또는 민락동(민락공원 인근) 활동이 가능한 자 • 아이돌봄(어린이집, 유치원 등) 관련 경력이 있는 자(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취업 취약 계층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8.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아이돌보미 시급 및 직무

구 분	내 용
활동수당	• 시급 10,590원 • 서비스 종류에 따라 추가금액 가산, 주휴일, 야간·휴일·연장근로 등 법정 제수당 별도 지급(2025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 의거)
활동내용	•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활동장소	• 수영구 내 이용가정 자택(원칙) •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 시설(서비스제공기관 사전 협의 필요)
활동 예정일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조회 및 현장 오리엔테이션 종료일로 2주 이내(7월 중)
기 타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필수 가입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일 경우 가입

4. 유의사항

- 본 채용계획은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 시 채용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며, 합격 후에도 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지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수영구가족센터는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수영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051-758-6187